

마음이 모여 마을이 됩니다!

성북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**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검토 보고**

1. 기획예산과-12613(2015.10.19)호와 관련입니다.
2. 제237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 본회의(2015.10.15.)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이송된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 의견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가. 조례안명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나. 제안이유 :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의 역할에 대해 현 제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,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및 제척·기피 사항을 신설함. 또한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에 대한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1)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하여 현 제도에 맞게 개정하고자 일부 조 및 호를 삭제함 (안 제4조 제3호, 제10조)
- 2) 위원의 임기 및 연임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제척·기피제도 규정 (안 제5조 4항 및 5항)
- 3)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“보고 및 검사 등”의 내용을 신설하여 재정지원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(안 제14조 3항 및 4항 삭제, 제 14조의 2 신설)

라. 재의요구 여부 : 재의요구 없음

붙임 1. 검토의견서 1부.

2.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문 1부. 끝.

주무관 **김재희** 사회적경제기획담당 **은현기** 사회적경제과장 **박대일** 기획경제국장 ^{10/22} **이용식**

협조자 **법제담당 박기훈** 기획예산과장 **代김관홍**

시행 사회적경제과-8771 () 접수 ()

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(삼선동5가) / <http://www.seongbuk.go.kr>
전화 02-2241-3892 / 전송 02-3292-6573 / jkhees@sb.go.kr / 대시민공개